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항목을 개선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을 명시하며,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개선

- 1)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과 ‘계속 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3호)
- 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4호)
- 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132조제1항)

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 명시(안 제20조제3항)

-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계속운전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유효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허가기관 제외(안 제133조제1항)

-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보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영 제144조제1항제1호)하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

라. 부지 사전 승인 추가서류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법 제10조제5항)의 위임사항 정비

마.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이용시설 허가 시에 조건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허가증 서식이 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증 서식에 허가조건란을 신설하는 등 허가증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중 해당 부지 사전승인을 받아 하고자 하는 굴착 및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서류(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을 말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

우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수립·유지되는지는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다만, 다른 법령 및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라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기 이내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영, 이 규칙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기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효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는”을 “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 방사선환경감시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제 호		
원자로시설 [] 건설 [] 운영 허가증		
본 사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	
	주소	
원자로	종류	
	용량	
허가일자		
허가조건	부여일자	상세내용(참조 문서정보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 제10조 [] 제4조제9항
 []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8항 에
 [] 제30조 [] 제25조제7항
 [] 제30조의2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 건설 을 허가합니다.
 [] 운영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연월일	변경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0조 ·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부터 적용하며,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운전하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증 또는 운영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중 해당 부지 사전승인을 받아 하고자 하는 굴착 및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서류(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을 말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 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 내용)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단서 신설>

가. ~ 마. (생략)

8. ~ 12. (생략)

13.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 비상사태에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

--. 다만,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8. ~ 12. (현행과 같음)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수립·유지되는지는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가. ~ 마. (생략)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

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부지특성의 변화

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마. 환경감시계획

<신설>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효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 ③ (생략)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생략) 2. <u>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u>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	<u>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u> 2. <u>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u>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
--	--

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

-----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 방사선환경감시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로 한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

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영 제143조제1항제1호의 자:</u> <u>5부</u> 2. ~ 4. (생략) ② (생략)	출) ① ----- ----- ----- ----- -----.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